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검량사업·감정사업 관리청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기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현재의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마련 (안 제4조, 별표 3)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인력 등)을 마련함

나. 항만종합서비스업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11조, 별표 5)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록취소) 기준을 마련함

다. 권한 위임 규정 정비 (안 제27조)

검량사업·감정사업의 관리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

장 및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량사업·감정사업의 사업 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라.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신고 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6)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기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현재의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별표 1

2.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별표 2

3.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 별표 3

제11조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으로, “**항만운송사업자**”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제6호의3부터 제6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제27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II 제1호 위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별표 5 II 제1호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을 “법 제26조제1항제2호, 법 제26조의2제4항 및”으로 하고, 같은 II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항만운송사업자”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하며, 같은 란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26조제1항제1호, 법 제26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II 제3호 위반사항란 제3호 중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하며, 같은 란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을 “법 제26조제1항제3호, 법 제26조의2제4항 및”으로 하고, 같은 II 제4호 위반사항란 제4호 중 “항만운송사업자”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하며, 같은 란 중 “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을 “법 제26조제1항제4호, 법 제26조의2제4항 및”으로 하고, 같은

II 제5호 위반사항란 제5호 중 “항만운송사업자”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하며, 같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 법 제26조의2제4항 및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별표 5 II 제6호 위반사항란 제6호 중 “항만운송사업자”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하고, 같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6호, 법 제26조의2제4항 및 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관리청은 제27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전단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별표 1 2.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별표 2 3.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 별표 3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 ----- ----- ----- -----

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 6. (생략) <신설> <u>6의2. ~ 6의5.</u> (생략) 7.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 ----- . <단서 삭제>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 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u> <u>6의3. ~ 6의6.</u> (현행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와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 . 1.·2. (현행과 같음) <u>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u>
--	--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에 관한 사무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 -----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2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사업종류	일반하역사업			한정하역사업
	항만별	1급지(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2급지(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군산항)	3급지(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내 용				
1. 시설	시설평가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급지별 시설평가액 최소 기준 금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5억원 이상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되, 관리청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비 고

- 관리청은 물동량(物動量) 감소,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3.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4.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21.>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가. 검수사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2급지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3급지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동해·목포항, 목포항, 군산항)	4급지 (1급지부터 3 급지까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검수사	24명 이상	1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나. 검량사업, 감정사업

구 분	검량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감정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검량사 또는 감정사	검량사 4명 이상	감정사 4명 이상	검량사 또는 감정사 6 명 이상

비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자격 보유자(동일인이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각각의 자격 보유자로서 중복 인정한다)를 기준으로 검량사와 감정사를 각각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 항)	2급지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군산항, 동해·묵호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1. 필수 기준	가. 자본금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나. 인력	별표 2에 따른 항만별 검수사업, 검량사업, 감정사업 등록기준 중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기타 기준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줄잡이업과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화물고정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중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줄잡이업과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화물고정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
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I. 일반기준

1.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하 “처분 “이란 한다)의 기준에 따르되, 그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다른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같은 위반행위 “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
의 사업정지기간에 다른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처
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하여 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 스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자가 법 제6조, 법 제26조의2제 1항 또는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 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2호, 법 제26 조의2제4항 및 법 제26조의5제 1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신고사업 인 경우만 해당한다)	

1의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법 제26조의2제4항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법 제26조의2제4항 및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법 제26조의2제4항 및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신고사업 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법 제26조의2제4항 및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등록취소		
6.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법 제26조제1항제6호, 법 제26	등록취소		

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조의2제4항 및 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			
----------------------------------	-------------------------	--	--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

가. 항만용역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 택·당진항, 여수항)	2급지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군산항, 동 해·목포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선박			
1) 제2조제1호가 목의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	통선: 10톤 이상	통선: 5톤 이상	통선: 5톤 이상
2) 제2조제1호라 목의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	급수선: 2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나. 선박연료공급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2급지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군산항, 동 해·목포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1) 또는 2) 장비			
1) 연료공급선(연 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100톤 이상	총톤수 40톤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
2) 연료공급차량 (유조차량의 경 우 「위험물안 전관리법」 제1 5조제1항 본문 에 따른 이동탱 크저장소를 말	탱크 용량 30 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20 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8킬로리터 이상

한다. 이하 같 다)			
----------------	--	--	--

다. 선박수리업

구 분	공 통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2. 공구창고 또는 공장 등	총면적 20㎡ 이상

라. 컨테이너수리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 택·당진항, 울산항)	2급지 (1급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작업장	총면적 35㎡ 이상	총면적 20㎡ 이상

마. 선용품공급업

구 분	공 통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항만용역업의 시설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알루미늄선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알루미늄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 3의2.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통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통선은 여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손해보험

4.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의 경우에는 선박의 수와 관계없이 총톤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의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선 또는 급수선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의 탱크 용량을 합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5의2.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료공급선의 선체 둘레에 방충재(防衝材)를 설치할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

다. 연료공급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填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자등과 체결할 것

5의3.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와 화재 소화에 사용되는 장비(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 등을 비치할 것

나. 연료공급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체결할 것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갖추어

라. 그 밖에 항만의 안전, 항만운영의 장애 및 항만에서의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공구창고 또는 공장 등의 기준은 건축물의 동수와 관계

없이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작업장 기준은 컨테이너 적재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건물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나.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연료공급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라.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마. 항만 특성,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항만에서 통선 또는 급수선의 사업 등록이 이루어지 않거나 과소하게 이루어져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바.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4